

『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
(안 제1조 ~ 안 제2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으로 해당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일괄 정비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